

1588-3249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한 푸른 숲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감염소나무
무단 이동 금지

감염소나무
펠람 사용 금지

감염의심목 발견 신고
1588-3249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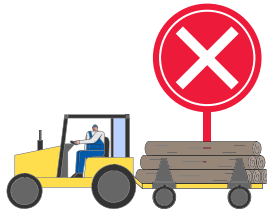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 적용대상 : 소나무류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위반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처벌



위반 사항	처벌 내용	관련 규정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지 않고 이동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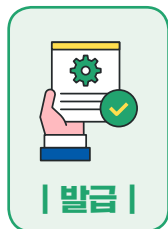
🚚 소나무류 이동하려면?

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 외
“미감염확인증” 발급	“생산확인표” 발급
훈증 등 방제 처리한 원목 또는 조경수, 분재	소나무류 전체

❗ 미감염확인증(생산확인표) 신청 및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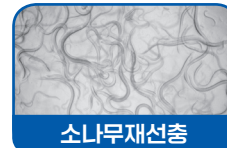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산림청 발급서비스
(map.forest.go.kr/minwon)



신청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산림재해앱
(모바일)에서 확인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1mm)으로 나무의 수분과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 죽이는 해충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능력이 없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주변 건강한 나무로 확산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솔잎이 아래로 처지고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감염된지 1년 안에 100% 고사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인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

* 최근 3년간 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결과 인위적 확산 64%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점에서 2km 이내 포함되는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

❗ 확인 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문의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 가능한 경우

- 1 훈증 등 방제처리를 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2 방제를 목적으로 원목을 방제기간(10월~이듬해 4월) 동안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 3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 4 조경수 또는 분재를 미감염확인증을 부착 후 이동하는 경우